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 연구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2022. 03.

담 당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이상영 사무관	☎ 044-201-3932	Fax:044-201-5592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송정근 주무관	☎ 044-201-3890	

목 차

I. 과제 개요	1
II. 주요 과업내용(제안요청)	2
III.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3
IV. 설계변경 조건	5
V. 성과품	5
VI. 보안대책	6
VII. 예정공정표	9
VIII. 제안관련 일반사항	10

※ 별첨 및 첨부서류 서식

- 〈별첨〉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
2. 제안서 작성요령

- 〈서식〉 1. 제안서표지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3. 용역(연구) 수행 실적
4.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현황
5.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

I . 과제 개요

1. 과업의 배경

- 도로터널은 쾌적한 도로주행 환경 및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계·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량 1천 kW 이상 터널(통상 1km 이상)은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상주 하여야함(도로터널 내 설치된 조명, 소방, 환기 및 방재 설비, 위험물의 수시적인 점검, 사고시 신속대응을 위하여 전문 관리자가 상주하여 관리하는 체계가 바람직)
- 2020년 기준 전체 754개 터널 중 669개 터널(88.7%)을 56개 용역으로 위탁관리 중이며, 85개 터널(11.3%)은 국토관리사무소 직접 관리
-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2016)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의 지속적인 개정과 위탁관리 업무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국도터널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점검, 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터널 기능을 유지시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 용역명 :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 연구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 소요예산 : 0.8억원(VAT 포함)

II. 주요 과업내용

가. 국도터널 위탁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 국도터널 위탁 관리 현황 분석
 - 국도터널 위탁 관리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도터널 위탁관리 대상 조사 및 검토
- 국도터널 위탁 관련 법규 및 기준 조사
 - “전기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도터널 위탁 관리와 관련된 법규 및 기준 조사

나.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의 효율적 시행 방안 제시

- 위탁관리 근무자 규정 및 배치의 효율적 시행 방안 제시
 - 위탁관리 근무자의 기본업무 관련 현실화 및 개정방안 도출
 - 위탁관리 근무자의 근무지침 관련 현실화 및 개정방안 도출
 - 위탁관리 근무자의 배치 관련 현실화 및 개정방안 도출
- 위탁관리용역 효율적 시행방안 제시(용역 대가산출기준 등)
 - 위탁관리 근무자의 인력산정방법(교체 및 조정 포함) 관련 현실화, 위탁관리 근무자의 교체 및 조정방법 관련 현실화 및 개정방안 도출
 - ‘22년까지 터널 원격제어시스템 완료후 구축되는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 ‘20년 종합감사(국토부) 결과를 반영한 용역 대가산출기준 제시
- 위탁관리 점검업무의 효율적 시행 방안 제시
 - 위탁관리 점검업무(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의 범위 및 내용 관련 개정방안 도출
- 위탁관리 용역 발주의 효율적 시행 방안 제시
 - 국도터널 위탁관리 용역 발주(대가산출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정방안 도출

다.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개정

-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개정안)”자문 및 의견수렴

-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제시

Ⅲ. 과업수행의 일반 지침

-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나.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따라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시 예정 공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정보고를 통하여 과업수행내용, 관련 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제출한다.
-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기술용역업체 포함)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 바.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아.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가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자.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차.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카.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IV.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나. 과업의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 다.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된 때
- 라.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V. 성과품

가. 성과품의 종류 및 제출시기

종 류	제 출 시 기	제 출 부 수
- 용역세부추진계획서	착수 후 30일 이내	3 부
- 최종보고서	준공시	5 부
-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	준공시	50 부
- 최종성과품 수록 저장장치(USB)	준공시	2 식

나. 보고서 작성

- (1)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2)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3)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하여야 한다.

VI. 보안대책

가. 일반지침

-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3) 용역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한다.
- (4)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를 개별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 소각하여야 한다.
-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11)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단계별 보안대책

(1) 보안성 검토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단계별	보안대책	비고
용역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책임자(정·부) 지정 ○ 수급자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징구 ○ 배부처에 맞추어 성과품 발간 	
용역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감독관 수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정기보안진단의 날에 용역업체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 - 용역업체의 과업참여자 임의교체 여부 확인 - 중간성과품 관리 철저 필요, 부수만 발간 - 각종 회의 시 작성되는 자료회수 철저 확인 -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의 폐휴지 소각실시 및 자료의 보관관리 철저 이행 여부점검 -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 및 확인 - 보안각서 징구, 작업장소의 제한구역 지정운영 여부, 자료보관함 비치여부 등 확인 	
성과품 발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성과물에 대한 보안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성과물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기업체에서 하도 발간 과정에 발생하는 성과물의 원지·파지 등 잉여물 회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기구나 USB 등 보조 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성과물 사본번호 부여 및 과다발간 지양 - 납품수량 외 임의 추가발행 금지 - 원판 회수 및 불량·파지 등의 파기 등 	
준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품 전량 인수 확인 	

VII. 예정공정표

구 분	추진계획(월)						공정 (%)
	1	2	3	4	5	6	
가. 국도터널 위탁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5	15	10				30
(1) 국도터널 위탁 관리 현황 분석	5	5					10
(2) 국도터널 위탁 관련 법규 및 기준 조사		10	10				20
나.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의 효율적 시행방안 제시		12	13	13	12		50
(1) 위탁관리 근무자 규정 및 배치의 효율적 시행방안 제시		3	3	3	3		12
(2) 위탁관리용역 효율적 시행방안 제시(용역 대가산출기준 등)		3	4	3	3		13
(3) 위탁관리 점검업무의 효율적 시행방안 제시		3	3	4	3		13
(4) 위탁관리 용역 발주의 효율적 시행방안 제시		3	3	3	3		12
다.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					5	5	10
(1)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개정안) 자문 및 의견수렴					3	2	5
(2)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 제시					2	3	5
사. 자문회의 및 보고서 작성					자문 4	보고서 2	6
사. 업무보고	착수 2					최종 2	4
공정 (%)	7	27	23	13	21	9	100

VIII.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2개사 이내로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비영리 법인 해당 없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낙찰자 통보 :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사업수행 대상기관은 개별 통지

3. 평가 및 협상기준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 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제안서의 평가결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세부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낙찰자 통보 :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사업수행 대상기관은 개별통지 함

나. 협상방법

- 가격협상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 할 수 있음

4. 제안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별첨 2 참조)에 따라 A4용지로 작성
-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규격: A4용지로 작성하며 세로쓰기 및 좌철함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 표를 제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다. 제출 장소 및 기한

-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서 설명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필요시 별도 통보)
 - 제안 설명회 개최시 제안서 설명은 PPT를 작성하여 하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함
-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야 함

<별첨 1>

제안 기술능력 평가 기준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배점
기술 능력 평가	연구인력의 우수성	○ 연구인력의 전문성(10점) - 본 연구용역과 참여인력 자격증 등을 감안한 기술능력 등은 어떠한가	20
		○ 연구조직의 적정성(10점) - 과업 수행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의 이해 및 계획 타당성	○ 연구계획의 구체성 -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절차, 연구 일정 및 연구결과물 등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30
		○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 연구목적 및 내용을 이행하기에 타당하고 적합한 연구방법, 연구절차, 연구일정 및 연구결과물, 연구비 등이 타당한가	25
	조사·분석 절차의 적정성	○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의 주요 항목에 대한 조사 분석절차가 포함되었는지(10점)	20
○ 과업지시서 상의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10점)			
사후관리	○ 사후관리계획 적정성 - 연구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보완계획이 있는가	5	
계			100

□ 평가방법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비고
30점 배점	30	27	24	21	18	
20점 배점	20	18	16	14	12	
10점 배점	10	9	8	7	6	
5점 배점	5	4	3	2	1	

※ 유의사항

- 점수계산은 각 평가요소별로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 공동도급시에는 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가점수 산정

- 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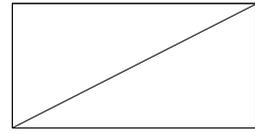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목차	작성방법	비고
[표지]	제안서 표지	서식 - 1
I.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목표 3.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 방법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II.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용역(연구)수행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재무현황 등 제시 제안사의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실적을 제시	서식 - 2 서식 - 3
III. 사업 수행부문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연구의 중요성, 앞으로의 전망 등 기술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등 기술 주요내용별 세부내용 및 과업 수행전략 등 기술 조사(자료 및 여론조사) 방법포함 과업수행 체계를 순서도로 기술 연구결과의 기대성과 및 향후 활용방안 기술 연구 추진일정 등 기술	
IV.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및 계획 2. 업무보고 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 추진 절차와 활동 내역 주요기법에 대한 설명과 후속단계와의 연관성 논리적으로 기술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월간·주간보고, 최종보고 등)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식 - 4
VI. 기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내용 및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양식 모음

1. 제안서 표지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3. 용역(연구) 수행실적
4.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사항
5. 삭제
6. 서약서
7.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업제안서

용역명 :

업체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 재무현황(최근 3년간 자산, 자본, 부채 등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매출액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또는 특급 기술자)					
연구원 (또는 고급 기술자)					
연 구 보조원 (또는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지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 주) 1. 【서식 4】 연구진 총괄표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서식 #6]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해설서 개발」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하되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0000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본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